

임원 선출 규정

임원 선출 규정

2016.10.27.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목적)이 규정은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용어의 정리)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- ①“임원”이라 함은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를 말한다.
- ②“회장단”이라 함은 회장, 상근부회장을 말한다.

제 2 장 임원 선출

제 3조(임원의 선출)①정관 제45조 1항에 의거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 또는 대의원 선거로 선출한다.

②선거는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선거 결과에 따른 다득표자를 선출한다.

③정관 제45조 3항에 의거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4조(선거권 및 피선거권)①선거권은 정관 제8조 1항의 정회원에게만 있다.

②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회원에게 임원선거의 출마자격을 부여한다.

제 5조(피선거권의 제한) 임원선출 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.

-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.
- ②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.
- ③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.
-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⑤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⑥타 기관에서 징계,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⑦협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.

제 6조(선거사무)①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기획관리본부에서 겸임하여 선거사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 (이하 ‘선거관리본부’라 칭한다.)

②선거관리본부장은 회장이 협회 임원중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.

③선거관리(기획관리)본부의 부서원은 선거관리 요원으로서 선거관리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맡은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④선거관리본부는 임원선출의 선거가 끝나면 선거사무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기획관리본부 본연의 업무로 전환한다.

제 7조(업무범위) 선거관리본부의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선거관련 안내문 발송 및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
- ②후보자 신청서류 및 자격 적부심의 및 후보자 명부 작성
- ③선거인 명부작성 및 선거사무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
- ④투표지 인쇄 및 선거 투·개표 관리
- ⑤개인정보 보호관리와 선거유인물, 홍보물 등의 배포

- ⑥공정선거 준수 의무 위반 조사 및 경고, 시정지시 등
- ⑦부정의 혐의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경고 및 시정지시.
- ⑧총회에 부정행위나 결격사유 보고 및 당선 무효 건의.
- ⑨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등

제 3 장 선거 관리

제 8조(선거일자 공고) ①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는 개최 40일 전에 공고 및 안내한다.

②공고 및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와 서면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9조(후보자 추천) ①정회원은 임원선거 각각의 입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, 동일직위의 후보를 2인 이상 복수 추천할 수 없다. 단 비상근 부회장과 감사는 복수 추천할 수 있다.

②정회원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복수 추천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따라 먼저 등록한 후보자를 등록하고 후순위의 후보자 추천은 무효로 한다.

제10조(후보자 등록) ①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선출 공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신청서[별지서식]를 작성하여 선거관리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때 후보자는 공약사항과 이력사항(사진포함)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.

제11조(입후보자 공고) ①선거관리본부는 입후보자 성명의 “가, 나, 다”순으로 후보별 기호를 정하여 선거일 10일전까지 회원에게 공고한다.

②입후보자 공고와 선거관련 사항 등의 공고 및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및 회원명부상에 있는 주소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공고 및 안내(입후보자 공약 및 선거홍보물 발송)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으며 선거관리본부가 대행하여 우편물 1회, 모바일(휴대폰 문자) 1회에 한하여 발송한다.

제12조(기탁금) ①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1,000만원, 상근부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500만원의 선거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협회 잠수입으로 한다.

③후보자의 사퇴, 자격상실 및 등록취소, 낙선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납입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4 장 임원 선거

제13조(선거인명부 작성) ①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본부에서 작성하여 관리한다.

②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4조(투표용지) 투표용지는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와 이름 및 선거관리본부에서 확인하여 날인한 용지를 사용한다.

제15조(개표방법 및 투표지 보관) ①개표는 선거 당일 선거관리본부장의 책임 및 선거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하며 총 투표수와 후보별 득표수를 확인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투표지를 보관한다.

- ②선거관리본부장은 선거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본부 요원이 아닌 관리요원을 충원하여 진행할 수 있다.
- ③기표가 명확하지 않은 투표용지의 유·무효에 대한 판단은 선거관리본부장과 선거 참관인의 합의하에 결정한다.

제16조(당선자 발표) 선거관리본부장은 개표 완료 후 득표현황과 함께 당선자를 결정하여 임시의장이 즉시 발표하도록 한다.

제17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(2016. 10. 27)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 이전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.